#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지침

제정 2022. 2. 7. 개정 2022. 6. 1.

본 지침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결정, 결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.

- ㅇ 이 지침에서 "훈령"이란 「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」을 말한다.
- 이 지침에서 "**발생부서**"란 「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」 제8조제1호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경정의 사안이 발생한 부서를 말한다.
- 이 지침에서 '**미발급액**'이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상 추가로 납부한 또는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.

### □ 심의 대상

- 납세자가 관세조사 등의 결과통지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
   발급에 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사안
  - <sup>①</sup>이미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을 받은 건, <sup>②</sup>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되는 건은 심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.

# □ 심의 관할

- o 세관의 발생부서가 속한 **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**에서 심의한다.
- o 다만, <sup>①</sup>수정수입세금계산서 **미발급액이 5억 원 이상**인 사안 또는 <sup>②</sup>관세행정 및 납세자의 권리·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

납세자보호관이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을 결정한 사안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### □ 처리 기한

○ 납세자보호위원회 **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**(초일, 토요일 및 공휴일 불포함)에 처리(심의결정 통지)한다.

### □ 심의 절차

- ① (심의요청서 등 접수 및 접수 통보)
  - 납세자가 관세조사 등의 결과통지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
     발급에 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사안
  - 세관의 발생부서가 속한 본부세관 **납세자보호담당관이** 붙임 1의 **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청서**(대리인이 있는 경우 붙임 2의 위임장 포함)를 **접수**한다.
  -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 즉시 발생부서에 접수한 심의요청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.
- ② (인계)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액이 5억 원 이상인 심의 요청 사안인 경우 즉시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관세행정 및 납세자의 권리·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사안인 경우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을 요청한다.
- ③ (의견서 작성·제출) 발생부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(초일, 토요일 및 공휴일 불포함)에 붙임 3의 발생부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(담당)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 ④ (의견조회 및 자료요청)

- 납세자보호(담당)관은 필요 시 발생부서의 장 또는 본청 국·실 등에 **의견조회** 및 **자료제출 요구**를 할 수 있다.
- 의견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발생부서의 장 또는 본청 국·실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 ⑤ (의견진술 안내 및 심의절차)

- 납세자보호(담당)관은 **납세자**와 **발생부서의 장**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**개최 3일 전까지** 회의에 참석하여 **의견을 진술**할 수 있음을 안 내하여야 한다.
- 납세자보호(담당)관은 납세자 및 발생부서장의 의견 등을 기술한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한다.
- 그 밖에 의견진술 안내 및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**훈령 제69조, 제70조**를 준용한다.

### □ 결정 및 통지

- ㅇ (결정 유형) 심의요청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  - <u>발급 결정</u> :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5조제2항각호 및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72조제4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
  - <u>미발급 결정</u> :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5조제2항각호 및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72조제4항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  - <u>일부 발급 결정</u> : 심의대상 중 일부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5조 제2항각호 및 「부가가치세법시행령」 제72조제4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

- (결정 통지) 납세자보호(담당)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을 발생 부서의 장 및 납세자에게 통지한다.
- o (기타) 기타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은 훈령 제71조를 준용한다.

# □ 결정의 효력

- o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(의결)의 효력은 **훈령 제39조제4항**\*을 준용한다.
  - \* "의결내용을 통보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의결을 존중하여야한다."

# □ 시행일

o 이 지침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2022년 1월 1일 이후 관세조사 등의 결과를 통지한 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#### ■ 붙임 1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청서

#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청서

HWATSUFF FILES							
납 세 자	상 호 (법 인 명)	( <del>?</del> ,	1000코리아	시업자등록번호		123-45-78910	
	성 명 (대 표 자)		홍길동	생 년 월 일	1950. 1. 1.		
	주 소 (사 업 장)	대전광역시 서구 청		사로189	전화번호	-	02-123-4567
	전자우편 주소	gila	ong.hong@000k	rorea.co.kr	휴대번호 <i>010-1234-5678</i> ( <i>담당: 김길동 대리)</i>		
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 금액		759,000,000원 (※수입신고건별 세부내역 별지 참조)					
심의요청 원인			☑ 관세조사 □ 원산지조사 □ 건별심사 □ 기타 ( )				
추가발생 세액 납투		부 여부	□ 납부	미납부	발생	세관	서울세관
발급신청 거부처분		- 여부	□ 있음		부서	과	심사2국 1심사관
서울세관장(심사2국 1심사관)의 관세조사 결과통지(서울세관 심 2022.1.1.)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 사실관계 및 발급요청에 대한 사유는 별지와 같습니다. ※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할 수 있음							
위와 같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, 아래와 같이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(민원서류접수 및 처리 불가)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							
첨부서류 : <i>사실관계 및 발급요청에 대한 사유서</i> 2022 년 1월 15일 신 청 인 : 홍길동 (인) (작성자) <i>통관팀 김길동 대리</i>							
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(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불가)이 있을 수 있고,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5조 및 제24조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수집·이용됨을 알려드립니다. ○ 수집·이용 목적 (민원처리와 사후관리 등 이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처리) ○ 수집 대상 개인정보 (본 서식 및 구비서류의 각 항목별 개인정보) ○ 보유·이용 기간 (5년)							
※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. ☞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☑ 동의하지 않음 □							
<ul> <li>※ 또한, 동법 제24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)의 수집·이용에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.</li> <li>☞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☑ 동의하지 않음 □</li> </ul>							

#### ■ 붙임 2 위임장

# 위 임 장

○ 성 명: ○ 전화번호:

○ 생 년 월 일 : ○ 사업자등록번호 :

○ 사업장소재지(주소) :

○ 자 격: ○ 관 계:

○ 이메일 :

상기 대리인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청 관련 사항을 위임합니다.

년 월 일

위 임 자

사업장소재지(주소):

법인명(상 호):

사업자등록번호 :

대표자(성 명): (서명 또는 인)

○ ○ 세 관 장 귀하

### ■ 붙임 3 발생부서 의견서

발생부서 의견서							
안건번호							
사실관계	- 당해 물품 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거래도(도식화 및 설명) - 당해 업체와 관련된 국내외 당사자들 및 당해 업체의 투자 구조 등 지배구조 -심사(조사)결과보고서 내용 중 과세누락과 관련된 사실관계 요약 등 (별지 사용 가능)						
과세 등 처분논리 (적용법조 포함)	상기 사실관계에 대한 처분의 법적논리 (별지 사용 가능)						
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의견							
발급 여부 의견	발급 불가 사유 (별지 사용 가능)						
첨부 : 심사(조사) 결과보고서 및 기타 참조자료							

# □ 부가가치세법

제35조(수입세금계산서)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(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)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(이하 "수입세금계산서"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-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(이하 "수정수입세금계산서"라 한다)를 발급하여야 한다.
- 1. 「관세법」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
- 2.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「관세법」에 따라 수정 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가. 「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」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「관세법」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나.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다른 경우
  - 다.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③ 수입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「국세기본법」 제26조의2제1항이나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# 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제72조(수입세금계산서)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. 이 경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.

- ② 세관장은 「관세법」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전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, 제38조의2제1항·제2항,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38조의4제1항, 제46조,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「관세법」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수정한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.
- ③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- 1.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
- 2.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
- 3.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
- ④ 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"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 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1. 「관세법」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자가 세액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
- 2.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「관세법」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·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

- 3.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
- 4. 「관세법」 제37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
- 5. 「관세법」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
- 6.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 또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등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지 못하여 일부 수입신고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자가 그 밖의 수입신고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정하게 신고한 것이 「관세법」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결과 확인되는 경우
- 7. 수입자가 거래가격에 「관세법」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(이하 이호에서 "가산요소"라 한다)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가산요소를 거래가격에 포함하려면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
- 8. 수입자가 「관세법」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로서 수입자가 해당 사유를 인식하는 데에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
- 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

### ⑤ 생 략

- ⑥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 ⑧ ~ ⑨ 생 략